

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

議 番	案 號
	3-5

提出年月日 : 93. 11

提 出 者 :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葛馬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目的으로 制定한 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는 同 地區에 대한 事業이 '89. 6. 30 換地確定處分됨으로서 事業이 完了되어 廢止함 .

2. 參考事項

- 事 業 名 : 葛馬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
- 位 置 : 西區 葛馬洞 일원
- 面 積 : 1,123,774m²
- 施行期間 : '79. 5. 10 ~ '89. 6. 30
- 施 行 者 : 大田直轄市長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할시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

● 대전직할시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[1983. 9. 13
조례 제953호]

개정 1982. 3. 13 조례 제 1186 호

개정 1984. 12. 5 조례 제 1417 호

개정 1987. 3. 20 조례 제 1551 호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(이하 “법”라 한다)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직할시 갈마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(이하 “구획정리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이 사업은 갈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하며 대전직할시 서구 갈마동, 둔산동, 월평동 일원의 1,037,573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분합, 지적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 조성사업과 기타 부대 사업으로 한다.

제 4 조 (비용의 부담)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, 지적, 토질수리이 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로서 부과한다.

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 5 조 (환지면적의 기준)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 토지 각필의 면적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(이하 “지적공부”라 한다)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면적에 의한다.

1. 공고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날 현재 공부상의 지적

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

제 6 조 (정리사업 전후의 평가) ① 정리사업 전후 토지 각필의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 평가사의 평가 가격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. 다만, 정리전

공공의용에 공한 토지로서 정리 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 가격을 부하지 아니한다.

② 정리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전문가의 평정 가격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 7 조 (공공용지 부담) ① 공공용지로서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종전 토지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폭원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정한다.

② 환지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률에 준하여 부담한다.

제 8 조 (환지계획) ① 본 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 등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 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와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.

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 할 수 있다.

④ 정리 후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용에 공한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환지면적보다 증환지한 면적은 제6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정수한다.

⑥ 기준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면에 신설 공도가 책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 할 수 있다.

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정수한다.

제9조 (특별지환지) ①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저촉되면 비환지를 할 수 있다.

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할수 있다.

제 10 조 (환지처분)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환지처분에 대한 청산) ①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정리사업 후 토지평정가격의 단가를 승한 금액을 말한다.

③ 제1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.

제 12 조 (토지의 관리)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체비지 및 보류지등이 관리처분) 사업비에 총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.

제 14 조 (납부서 통지)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자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준한다.

제 15 조 (환지 예정지의 사용)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(이하 “토지 소유자”라 한다)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(“별지 제1호서식”)를 받아야 한다.

제 16 조 (대리인 선정신고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시내 거주하지 않는 자는 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대리행위할 자를 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신고(별지 제3호 서식)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부동산 등기신고) 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한 때에는 소유권이전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법인신고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주소성명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

다.

- 제 19 조 (신고의무 불이행시의 보상한계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소유자가 제16조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.

제 20 조 (증명) 시장은 사업기간 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등기완료 통지)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 필등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 (조례 제953, 1186, 1417, 155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